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충전요금 정보 제공 범위에 단위가격·요금제 유형 포함〉

■ 박홍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6496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충전요금 정보 제공 범위에 단위가격·요금제 유형 포함	2

I. 제안경위

2026년 2월 2일 박홍배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2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공해자동차등의 충전시설 사업자에게 충전시설의 위치, 규모 등의 설치 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하도록 하고, 충전시설의 충전요금 등 이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충전요금이라는 총괄 가격 형태로만 제공하고 있어, 저공해자동차등의 이용자가 충전소에서 충전을 시작하기 전에 요금제 유형 등을 구분하여 확인하거나 비교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로 인해 이용자는 실제 적용될 충전요금을 사전에 예측하거나 합리적으로 선택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충전요금의 범위에 단위가격 및 요금제 유형 등에 따라 구분한 요금을 포함하도록 하여, 충전요금 정보 제공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알권리 및 체감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10제2항).

Ⅲ. 검토의견

1. 충전요금 정보 제공 범위에 단위가격·요금제 유형 포함

개정안은 전산망에 제공하는 저공해자동차등의 충전시설 요금 정보에 단위가격 및 요금제 유형 등에 따라 구분한 요금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10제2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법률 제21123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제58조의10(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전산망 등록 등) ① (생략) ② 저공해자동차등의 충전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해당 충전시설의 이용 상태, <u>충전요금</u> , 고장 여부 등 이용정보를 제58조제16항에 따른 전산망에 실시간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법률 제21123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제58조의10(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전산망 등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충전요금(단위가격 및 요금제 유형 등에 따라 구분한 요금을 포함한다)</u> ----- ----- ----- ----- ----- ③·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58조¹⁾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 건설기계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는 전산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동법 시행규칙²⁾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은 무공해자동차등연료공급시설에 관한 정보관리 전산망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무공해통합누리집(ev.or.kr) 개요]

- (목적) 무공해차 및 무공해차 인프라에 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무공해차 이용자에 대한 편의 제공 도모
- (주요기능) 무공해차(전기차, 수소차) 등록 및 보조금 지원 관리,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보조금 신청·접수 및 정보* 관리, 전기차 충전인프라 불편민원센터 운영 등
 - * 위치 및 규모, 운영기관, 이용가능시간, 이용가능여부 등 상태, 충전요금, 충전현황 및 사용 이력 등
- (운영기관) 한국환경공단



- 1)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 중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 중 제2조제16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망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9(무공해자동차등연료공급시설 정보관리 전산망의 설치·운영)
 - ①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58조제1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 법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자동차 또는 법 제2조제16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하 “무공해자동차등연료공급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관리 전산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무공해자동차등연료공급시설의 위치 및 상태
 2. 무공해자동차등연료공급시설의 종류
 3. 무공해자동차등연료공급시설의 충전횟수 및 충전량
 4. 무공해자동차등연료공급시설별 결제정보(「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간의 요금정산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 ② 법 제78조에 따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라 한다)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보관리 전산망을 운영할 수 있다.

전산망에 등록된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2026년 2월 기준 전기차 충전시설은 총 508,356,286개소, 수소차 충전시설은 총 468기임.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현황('26.2 기준)]

구분	전기차	수소차
계	508,356	468
서울	73,214	15
부산	31,029	24
대구	24,376	10
인천	31,254	41
광주	14,773	15
대전	14,513	16
울산	10,374	28
세종	6,263	6
경기	148,218	91
강원	17,156	24
충북	16,946	35
충남	22,027	28
전북	17,406	38
전남	16,347	20
경북	22,574	29
경남	30,004	45
제주	11,882	3

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차 충전시설 기준 전산망에 등록된 충전정보는 기관명(사업자명), 구분(완속/급속 충전), 이용자 유형(회원가/비회원가/로밍사업자 회원가)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전기차 충전정보 예시]

전기차 충전정보

전기차 충전기 종류

전기차 충전 요금

로밍사업자 회원 충전요금

기관명

기후에너지환경부

구분

급속

검색

! 화면에 표시된 요금은 기준가격으로 충전용량별 등 상황에 따라 요금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충전요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평균요금 - 급속(회원/비회원) : 340.1원 / 414.7원 , 완속(회원/비회원) : 285.3원 / 377.4원

10개씩 보기

엑셀저장

153건 조회

기관명	구분	회원가	비회원가
기후에너지환경부	100kW급 이상	347.2	347.2
기후에너지환경부	100kW급 미만	324.4	324.4

회원 소속기관

찾기

☐ 제주특별자치도
 ☐ 차밥스
 ☐ 차지인
 ☒ 채비
 ☐ 채움모빌리티

충전기 운영기관

찾기

☐ 제주특별자치도
 ☐ 차밥스
 ☐ 차지인
 ☒ 채비
 ☐ 채움모빌리티

검색

전체 요금엑셀 다운로드

! 회원 소속기관의 충전요금과 로밍협약 충전요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 소속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충전기)	GS차지비(충전기)	채비(충전기)
기후에너지환경부	1 ~ 99kW 324.4원 100 ~ 350kW 347.2원	1 ~ 50kW 324.4원 51 ~ 350kW 347.2원	1 ~ 50kW 324.4원 51 ~ 999kW 347.2원
GS차지비	1 ~ 50kW 324.4원 51 ~ 350kW 347.2원	1 ~ 49kW 319원 50 ~ 50kW 335원 51 ~ 999kW 345원	1 ~ 400kW 485원
채비	1 ~ 50kW 324.4원 51 ~ 999kW 347.2원	1 ~ 400kW 485원	1 ~ 29kW 275원 30 ~ 30kW 315원 31 ~ 50kW 410원 51 ~ 400kW 430원

- 5 -

개정안은 충전시설 사업자별로 상이한 요금정책에 따라 복잡한 요금체제로 인해 소비자 불편이 발생³⁾하고 있고, 요금제 유형을 비교하기 어려움에 따라 예상치 못한 요금 부담이 발생함에 따라, 통합전산망에 요금 안내를 명확히 하게 함으로써 소비자가 충전요금 구조를 명확히 인지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이는 이용자가 충전 전 실제 적용 요금을 보다 투명하게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사용자 편의를 제고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현행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사업자별 회원가, 비회원가, 로밍 충전요금 정보가 KWh당 단위가격으로 이미 제공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에 따를 경우 향후 새로운 요금 체계가 등장할 때마다 법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행정적 탄력성과 입법 효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법률 제21123호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10제4항는 전산망에 등록하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충전 정보의 구분, 이용자 유형 등 구체적인 정보는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전기차 충전요금 표시 실태조사」, 한국소비자원(2025.11.)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10]

제58조의10(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전산망 등록 등) ① 저공해자동차등의 충전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자는 충전시설의 위치, 규모 등 설치정보를 제58조제16항에 따른 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저공해자동차등의 충전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해당 충전시설의 이용 상태, 충전요금, 고장 여부 등 이용정보를 제58조제16항에 따른 전산망에 실시간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충전시설의 설치정보와 이용정보를 소방청 등 관계 기관에 제공하고, 저공해자동차등의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정보와 이용정보의 구체적 범위 및 전산망 등록과 제공의 절차,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공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11. 11.]

문 의 처

02)6788-5546